

##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검토
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기관,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,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.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.

#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

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.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.

#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려면

-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다만 19세 미만(2002.1.1.이후 출생)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「자료제공동의신청」
  메뉴 중 「미성년 자녀 신청」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연말정산시 만 19세(2001.12.31. 이전 출생)로 성년이 된 자녀는 자료제공이 종료되므로
 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.
  - ※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없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.

# 자료제공동의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

간소화메뉴 중 「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」에서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삭제 자료를 연말정산에 사용하려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# 국세청 사칭 스미싱, 파밍 주의

국세청에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,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(영수증 발급기관) 외에 문자메시지(SMS)를 발송하지 않으니,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, 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